

## 분묘개장공고 [1차]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신고 후 개장하시기 바라며,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거나 개장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우리군에서 임의개장 하겠음을 공고합니다.

### 1.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

| 공 사 명                   | 위 치 |    |    |      | 기수 | 비고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|----|------|----|-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| 군   | 읍면 | 리  | 지번   |    |    |
| 예천 갈구1리(장좌골)<br>농로 개설공사 | 예천  | 예천 | 갈구 | 산7-5 | 1  |    |

2. 개장사유 : 예천 갈구1리(장좌골) 농로 개설공사 구간내 편입

### 3. 개장방법

가. 유연분묘 : 연고자 또는 관리인이 협의개장

나. 무연분묘 : 공고기간 종료 후 우리군에서 임의 개장

4. 개장 후 안치장소 : 경북 안동시 풍산읍 노리 422번지  
사단법인 안동추모공원 납골당

5. 안치기간 : 개장 후 10년

6. 공고기간 : 2020. 3. 16. ~ 2020. 6. 15.(3개월간)

7. 신고 및 문의처 : 예천군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(☎054-650-6338)

8. 신고시 구비서류

가. 신고자(연고자)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 
분묘와의 관계증명 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.

나.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: 제적등본, 족보, 가첩 등

9. 기 타 :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(공사 중 추가 발견  
분묘 포함) 및 유연분묘 중 연고자 확인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 
공고로 갈음합니다.

2020년 3월 16일

예 천 군

